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6. 3. 7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2월 18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2월 18일

라. 상정일자 : 제19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제4차 사회건설위원회(2016. 3. 4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복지정책과장 김복실)

가. 제안이유

- 「긴급복지지원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기사유의 기준이 마련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- 긴급복지지원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(안 제3조)
-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체(안 제4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이태선)

-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(2015. 7. 1. 시행)의 개정으로 빈곤 위기가정

에 대한 긴급지원 여부를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신속히 지원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임.

○ 조례안은 5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

○ 주요 내용을 보면

-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
- 안 제3조에서는 긴급지원의 위기상황을 인정하는 사유를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2조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 안내와 우리 구의 여건과 실정에 맞게 제1호에서 제12호까지 지원의 대상이 되는 위기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.
- 안 제4조에서는 긴급지원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토록 함.

○ 최근 빈곤 위기가정의 계속된 자살 사건 발생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대상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임.

○ 따라서 본 조례안은 신청과 선별을 통한 기존의 복지에서 벗어나 복지사각지대에 빠져있는 구민의 긴급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을 확대하여 긴급지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찾아가는 복지를 통하여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등 긴급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에 문제점은 없음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제 124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6. 2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정이유

긴급복지지원법(법률 제12934호, 2014.12.30. 공포, 2015.7.1.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기사유의 기준이 마련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(안 제1조)
- 긴급지원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(안 제3조)
- 긴급지원심의위원회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및 근거 :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2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협의사항

- (1) 규제심사: 해당없음
- (2) 부패영향평가: 평가실시(의견 없음)
- (3) 성별영향분석평가: 평가실시(의견 없음)

라. 기 타

- (1) 입법예고(2015.12.24. ~ 2015.1.13. 20일간)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긴급복지지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6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특성에 맞는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긴급복지지원”이란 제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.
2. “위기상황”이란 법 제2조에서 규정한 상황을 말한다.
3. “아동”이란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) 법 제2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가구원의 보호, 양육,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가. 입원환자, 치매노인, 알코올 중독자,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,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
 - 나. 임신,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대상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

- 다. 취학 전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.
 - 단, 장애아동 등 요보호 아동은 연령 기준 미적용하며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
- 라.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
- 마.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, 폐가 등에 생활하는 경우
- 바.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, 알코올·도박 중독,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
- 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. 단, 본인포기, 자활거부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보장이 중지된 경우 제외
- 3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- 4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라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
- 5. 실직, 폐업 등 사유로 수도, 가스 등 그 사용료를 체납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
- 6.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
- 7. 실직,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(임시거주지 포함)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
 - 가. 월 임차료가 주거지원 지원기준의 120퍼센트 이하인 경우
 - 나. 월세 차감 후 남아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
- 8.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

9.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채무를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
10.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, 정신건강증진센터,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
11.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하는 경우
12.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

제4조(긴급지원심의위원회)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.

제5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